한국계량측정협회

수 신 공인교정기관 대표

(경유)

제 목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개정 내용

-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(3.5%)
-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구조개선
  * 정액변경(72), 실비전환(27), 교정기관 이관(128), 서비스 중단(110)
- (상세) 붙임파일 참조

나. 시행일자

- 2022년 7월 1일

붙임 1.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1부.
2. 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1부. 끝.

한국계량측정협회장

주임	염호준 03/30	부장	좌상훈 03/30	부회장	김상곤 전결 03/30

협조자 부장 최봉식 03/30

시행 교정측정사업부-95 (2022.03.30.) 접수 ( )

우 067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47 (한국계량측정협회) / http://www.kasto.or.kr

전화 /팩스번호 / / 비공개(7)